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충청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연철흙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1년 6월 30일

나. 회부일자 : 2021년 7월 2일

3. 제안이유

재난발생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민·관이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각각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재난 예보·경보시설 관리·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방송사, 마을방송, 긴급재난문자 등으로 재난 예보·경보를 발령하고 있으나 신규설치와 노후 시설 보강 및 교체 등을 통해 시스템을 확충하는 한편,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조례 제정의 정당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 경북,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전남, 세종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으로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 제47조의3에 따라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조례의 제정은 가능함.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제2조는 각각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
 - 안 제3조는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 및 제5조는 각각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6조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서 재난상황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파 될 수 있도록 규정함.

○ 입법예고('21. 6. 22.~'21. 6. 28.)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재난발생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민·관이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각각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 제4조에 따른 공공부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물론 타 시·도의 경우처럼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과 운영에 대한 민간영역의 정보제공 또는 기술지원 등을 고려하여 재난발생 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함.